

기일 지정 신청

신청인

김기창(金基昌)

(우)136-075, 서울 성북구 안암 5가 134-20

이메일: keechang@fastmail.fm

피신청인

사단법인 금융결제원

(우)135-758,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

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(담당 변호사 정진영 등)

사건 번호

2007머978 손해배상(기)

재판부

민사92단독(조정)

2007.5.17. 있는 조정 기일에서 귀원은 각 당사자가 조정 합의안 초안을 제출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.

귀원의 지휘에 따라, 신청인은 2007.5.28. 조정 합의문(제3차 수정)초안을 피신청인과 귀원에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.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공한 합의문 초안에 대한 반응도 없을 뿐 아니라, 귀원의 지휘가 있는지 한 달이 지나도록 자신의 합의안 초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신청인은 귀원이 적절히 기일을 지정하셔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2007.6.14.

신청인 김기창